

제416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22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
- 간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0)

상정된 안건

-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 1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 1
- 간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0) 1

(15시09분 개의)

○소위원장 강선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여기 상임위원장에 언론인분들 계실까요? 다 나가셨나요?

본격적인 법안 심사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
- 간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0)

○소위원장 강선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간호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변경이 된 것 같아서.

상임위 의사일정은 국회법 49조에 따라서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 간 협의해서 정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존경하는 강선우 민주당 간사님과 협의를 통해서 간호법 관련해서 추경호 의원안·강선우 의원안을 소위에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협의를 마쳤고 각 의원실에도 공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당일 11시쯤에 위원장께서 행정실에 민주당 이수진 의원안을 직회부해야 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위원장과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있어서 통화는 했는데, 그래서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차여차했었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열리는 것은 지금 의료계 비상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까지도 마쳤고 또 전공의들 현장 복귀율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불안이 크다, 그래서 몇 주 전에 간호사협회 집행부에서도 빨리 이것을 법제화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는 간호사법, 간호법이 지난 전체회의에 법안 안건 상정으로 안 되는데 법상 숙려기간 도과한 것 2개는 상정하기로 그렇게 여야 간 합의를 했었고 거기까지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된 일이었고 의사일정이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굳이 하겠다면 오늘 어차피 급하게 할 게 아니라 다시 소위 일정을 늦추거나 그래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수진 위원님 뜻은 존중하고 알겠지만 협의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께는 ‘민주당 안에서 논의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저의 통화 내용의 끝이었고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오늘 와 보니까 3개 법안이 바로 직회부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법 규정을 무시한 건지 뭔지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 같은데……

그리고 간사님과도 제가 통화를 또 했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일들을 민주당 간사님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저랑, 간사끼리 협의하는 데 도움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제가 나누었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이수진 의원님 안도 같은 취지 법이기 때문에 같이 회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있지 말고 얼마간이라도 늦춰서 정부도 그다음 보건복지위원회도 검토보고서도 제대로 작성하고 각 이해관계 직역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이 심각하고 또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불안이 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진료지원간호사의 법제화에 저는 속도를 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하겠다고 한 것이라서 그 방법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아쉬움이 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그 말씀 주신 취지 잘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소위원장 강선우**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이수진 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께서 소위 진행과 관련해서 안건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제 법안이 지난 전체회의 때 이틀이 부족해서 전체회의에 상정이 안 됐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국회법에 따라서 간사 간 협의 그리고 위원장이 소위에 직회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법안이 회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지요. 아마 급하게 국민의힘에서는 PA 간호사 양성화가 중요하다 싶어서 간호법 통과를 지도부랑 논의하셔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21대에 간호법이 저출생·초고령화사회 속에서 간호업무와 관련한 법이 명확하게 규정돼야겠다 이런 취지부터 시작된 거였고, 그 안에 전문 간호사라든지 또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PA 간호사라든지 간호사들의 업무의 영역이라

든지 기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PA 간호사가 필요하고 또 PA 간호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만 저희도 졸속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국민들 건강 문제라든지 불필요한 오해가 야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도 양당이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다양하게 간호법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빠르게 날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상정이 된 것이니만큼 이후에는 논의가 간사 간에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저도 기대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매우 궁금했습니다. 소위가 잡힌다고 했는데 법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매우 궁금했는데 사실 조금 기다렸지요. 기다렸는데, 지난 전체회의 때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상황이 저에게도 얘기가 안 되고 통화도 안되고 좀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국회법에 따라서 직회부가 됐고, 또 김미애 간사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 역시 이 간호법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원만하게 의사가 진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3건을 지금 회부해서 하는 겁니까? 이미 간사 간에 협의한 내용과 달라져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소위원장 강선우 안건 상정에 관해서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국회법에 돼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의 사태들은 저도 모르게 진행된 부분이어 가지고 저도 일방적으로 통보를, 통보식으로 알게 됐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는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태여 이렇게 급하게 하면 되나, 그럴 바에는 좀 더 늦추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수진 위원님 안건 당연히 같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논외로 두고 2건만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랬는데, 참 아쉬움이 큰데……

○소위원장 강선우 그래서 그때 김미애 간사님이랑 저랑 말씀을 나눌 때는 이게 첫 시작을 하는 자리니 각 당의 당론 법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회의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께서도 간호법을 발의하셔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논의의 범위나 내용을 넓혀 가는 그런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아침에 상황이 좀 급격하게 변화했고 그리고 제가 알았으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몰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다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강선우 예.

○서영석 위원 차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선민 의원님도 법률안을 발의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면 일단 검토를 하고 그러고서 나중에 병합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큰 탈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예.

○김미애 위원 저는 그렇게 해도 좋은데 구태여 급하게 오늘 소위 일정을 잡았던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하게 해 달라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냐, 좀 늦추자는 취지였는데 그럴 거면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전체회의 하고 오늘 이렇게 급하게 월요일에 갑자기 일정을 잡을 이유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게 더 효율적인가 싶은데 다음에 또 병합 심사를 하고……

○남인순 위원 여당에서 먼저 좀 하자고 한 것 아니었었어요, 간호법?

○소위원장 강선우 예,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린. 그런데 어쨌든……

○김미애 위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강선우 간사님이 연락 오셔 가지고 급하게 간호법이든 간호사법 소위 심사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도 동의를 한다, 지금 안 그래도 의료 현장 PA분들의 불안이 크다는 데 동의한다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것만 원 포인트로 심사하는 것으로 된 배경에는 속도를 내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굳이 안 뗄 것 같으면 급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뒤늦게 다른 의원님들 법안까지 같이 병합해서 할 거라면 굳이 오늘 이렇게 안 해도, 1~2주 좀 늦춰도 될 법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했다가 또다시 병합하면 또 심사하고 그러면 더 비효율적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저희가 다소 급하게 이 일정을 잡게 된 배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관련돼 가지고 빠르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정을 잡게 됐습니다, 제현절 날.

○백혜련 위원 이런 걸로 더 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충실히 심리를 하면서…… 어차피 이 법안 자체가 오늘 꼭 된다는 보장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저희가 해도. 그러니까 오늘 심리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다음에 또 한 번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 김선민 의원안까지 병합해서 한꺼번에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굳이 오늘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이었어요. 저는 양당 간의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 가지고 심사해서 속도를 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다면 급하게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의사일정을 잡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자…… 엄청나게 저한테 빨리 좀 잡아 달라고 해서, 금요일 오전까지 말씀해 달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태여 늦출 이유는 없다…… 제가 개인적 일정으로 밖에 있다가 운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빗길에 급하게 왔는데 그런 배경을 제가 속속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사실은 대표발의된 법안 모두 가지고 비교검토를 같이 하는 게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굳이 안 할 상황이라면 오늘 안 했어도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소위원장님께 오늘은 이 3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추후에 또 발의되는 것 있으면 계속 이어 갈 거라면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는 없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까 총리께서도 부탁드렸다는 게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빨리 법제화하는 것, 이것만이라도 좀 속도를 내자는 취지였습니다.

아니면 굳이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이견이 많다라고 여겨서 하나하나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1대에도 격론을 펼쳤기 때문에, 또 재의 요구되어서 부결된 그런 법이고. 이것을 다시 이해관계, 직역 간의 의견을 다 들어서 만든 거고 양당 간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각자는 정리되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은.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게 없지요?

○이수진 위원 잠시만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소위원장 강선우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저는 오늘 이 간호법 논의가 급한지 안 급한지 김미애 간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것 제정법 아닙니까? 하루 해 가지고 소위에서 다 진행될 수도 없는 거고 기존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고, 제정법을 소위 하루 만에 통과시키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숙성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오늘 급하게 잡은 것 같기는 하지만 급한 사정은, 여나 야나 지도부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저희가 다 속속들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부도 급하니까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그렇게 쉽게 금방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들이 거수기도 아니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집중적으로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교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미애 위원 맞지요, 그게 원칙론이지요.

○이수진 위원 내용 보면 각 단체나 반대하는 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위원님들도 다 보시고 숙지하고 왔을 것이고. 오늘, 보통 소위가 2시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3시에 시작하신 것 같고 이 얘기 가지고 계속 진행하다 보면, 벌써 30분 다 돼 가는데……

그래서 아까 서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논의할 부분들은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에 소위, 소위 두 번에 끝날지 세 번에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진행해 봐야지 아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진행을 해 봐야 의견들이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몇 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빠르게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강선우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그러면 그 법안이, 이수진 의원님 법안 직회부는 어디서 결정한 건가요?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거지요.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박주민 위원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소위원장 강선우 예.

○남인순 위원 그런데 그건 여야 간사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고 더구나 저희가 하려고 하면, 김선민 의원님 법안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직회부를 할 거면 다, 위원장님이 판단하셨으면 그걸 두 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선민 의원님 안은 또 빠졌고 이러니까 이게 좀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김선민 의원님 안에 대한……

또 보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이수진 의원님 안은 검토를 하셨는데 김선민 의원안도 검토한 게 있나요, 혹시?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이수진 의원안도 의사일정이 늦게 추가되는 바람에 조문별 검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선민 의원안은 오늘 회부돼서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남인순 위원** 아, 오늘 회부돼서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남인순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이 이것을 직회부를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예는 쭉 있었습니다, 그동안 복지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논의를 했고 또 유사한 안이 올라오면 직회부를 다 협의하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선민 의원님 안까지 해서 직회부를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아니면 안 하려고 한다면……

○**소위원장 강선우** 검토보고서가 가능할까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지금요? 김선민 의원안은 사실 안이 어제까지만 해도 시스템에 안 떠 가지고 제가 안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리고 이수진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조문별 검토가 지금 같이 여기 이렇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빠져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빠져 있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남인순 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직회부된…… 두 개를 직회부하려고 하면 오늘 심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안에 대해서.

○**김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어요.

○**남인순 위원** 그거는 추가로 다시 의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수진 위원** 제가 환노위 할 때도 환경노동위원회 노조법 2·3조……

○**소위원장 강선우** 예,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손 들었거든요.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할 때도 한 스무 분의 의원들께서 계속 발의를 하셨어요. 개문발차를 했습니다, 열어 놓고 또 올라오면 같이 논의하고. 왜냐하면 내용들이 아주 이질적이거나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소한 차이고 또 이미 이해관계가 침예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오늘 이렇게 다들 바쁜 시간에 모이셨는데 논의하시고 또 김선민 의원님 안이 검토돼서 넘어오면 그거 가지고 또 같이 붙여서 논의하시면 될 일인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냥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미애 위원** 이수진 위원님 말씀 맞아요. 맞다면 굳이 오늘 위원장께서 여야 간사 간 합의된 것을 넘어서 하실 게 아니라 오늘 협의된 그런 안건에 따라서 의사를 진행하고 심사를 하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는 방향으로 더해서 그때 한꺼번에 회부해서 병합 심사를 하면 될 건데 굳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셨는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지금 이 얘기 계속 해야 되나요? 전체회의 때부터 얘기를 다시 꺼내야 되나요, 제가?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소위원장 강선우 그러면 우선 그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했으니까요 논의를 시작하시고 어떻게 돼 가는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게 있다면 또 추가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서영석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그러면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 간호법안, 의사일정 제2항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심사 참고자료가 두 권입니다.

2개의 제정안에 대한 심사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비교는 추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들은 현재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 중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들의 주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제명의 경우 강선우 의원안 및 이수진 의원안은 간호법이고 추경호 의원안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적용 대상은 강선우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인 데 반해 이수진 의원안은 요양보호사 등 간병인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타 법과의 관계는 추경호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은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경호 의원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을 의료법 등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안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강선우 의원안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와 보건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추경호 의원안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하여는 강선우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추경호 의원안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선우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교육전담간호사를 간호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수진 의원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조의2를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추경호 의원안은 해당 규정을 제정법으로 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을 16쪽까지 정리한 것인데요.

검토보고서에 비해 추가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11쪽, 교육부 의견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대한약사회 의견 추가돼 있고요. 15쪽에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의견과 중등간호교육학회 의견이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안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은 해당 소위자료 8쪽부터 1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적인 간호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변화 등으로 증가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필요 한 측면이 있으나 독립적인 간호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지역단체 간 이견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목적 조항입니다.

21대 국회 의결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목적 조항의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제정안에서는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라는 포괄적인 영역에서의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간호사 단독 개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 및 진료지원 업무 근거입니다.

강선우 의원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 진료의 보조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일일이 하위법령에서 열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의 진료지원 업무 규정에 관해서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취지에 반한다는 관련 직역단체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입니다.

각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고, 추경호 의원안은 각 호의 응시자격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상응하는 교육 수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학력 상한 논란의 소지가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조항 규정 여부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조항을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법률에 이관하여 규정하는 것

은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 간호사 등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서비스로 그 내용을 간호 관련 법률에서 단독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이견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요지는 19쪽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입법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하신 후에 주요 내용별 검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지금 전체적으로 3건의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명과 내용이 대부분의 골격은 비슷하고 몇 가지 쟁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쟁점별로는 수정의견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법안의 취지나 의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 수정의견을 나중에 검토할 때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법안 통과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그러면 조문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해당 조문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21쪽, 법률의 제명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두 가지 제명 중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쪽, 목적입니다.

21대 국회 의결안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라는 용어를 구체화한 것인데요. 일부 지역단체에서는 제정안이 비의료기관에서의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4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남인순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강선우**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이걸 다 설명하실 건가요?

○**소위원장 강선우** 아니면 하나하나씩 하고 끊어서 갈까요?

○**남인순 위원** 하나하나씩 하고 끊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그럼 목적까지만 일단 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그러면 제1조 관련해서 논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거나 의견 주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 보건복지부 의견 안 듣고요?

○**소위원장 강선우** 위원님들 의견 먼저 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복지부 의견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제가 말씀 먼저 드릴까요, 의견?

○**소위원장 강선우** 예.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먼저 제명은 저희는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추경호 의원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취지는 지금 현행 의료법이 있고 의료라고 하는 개념 안에 사실 간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독자적인 법률로 간호사의 업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법체계의 명확성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함으로써 이원적 법체계의 불필요한 오해를 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유사 입법례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을 참고해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에 찬성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제명이 크게 달라지는 건데, 간호법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로 된 건데 지금 근거로 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의료기사가 있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등이 있어서 다른 자격의 면허를 가진 것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등’ 자를 붙였는데 이 경우는 그 경우와 좀 다른 건데……

간호 업무 체계에 대한 규정을 짓는 것이어서 간호법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적절할 것 같은데, 의료기사법을 이유로 들어서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지금 동법에서 규정하는 직렬이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두 가지 직렬이 있고요, 지금 이수진 의원안은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체계는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의 요구된 법안 제명이 간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좀 달리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의사결정하시기보다는 다른 조문을 먼저 쭉 하시고 제명은 맨 마지막에 한번 논의를 추가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진행하는 상황은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얘기는 이수진 의원안을 포함한, 요양보호사들까지 포함한 것을 법률로 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것은 아니지만 일단 직역이 간호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고 두 가지 직역이 있기 때문에 ‘등’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제명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대안도 고려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게 있으니까 또 간호법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간호법 얘기했을 때는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던 맥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직역이라고 얘기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차관님, 처음에 논의됐던 배경은 이게 직역이라기보다는 직무, 간호라고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약사법이라고 얘기할 때 약과 관련한 일이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남인순 위원 그래서 저는 간호법도 간호와 관련한 직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무라는 부분에서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는 근거가 사실 있는 거지요. 아까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직무적인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대안을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맨 나중에 얘기하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정부나 아니면 지금 추경호 의원님 안에서도 '간호사 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고집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관련해서 더 의견 주실……

○김미애 위원 저는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말씀과 조금 다른 견해인데 제명을 직무 중심으로 할지 직역 중심으로 할지 보면 보건의료인 관련한 법체계가 의료법을 기본으로 되어 있고 의료법 안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와 간호조무사, 안마사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그다음에 의료기사에 대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약사와 한약사에 대해서는 약사법에서 각각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김미애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간호라고 해서 직무 중심으로 간다면 우리가 지금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인데 이 범위를 넓힐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명은 분명한 게 좋다는 생각이고 법체계상 맞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이 맞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차관께서 방금 거부권 행사 이후에 다시 논의되는 간호법 관련해서, 그래서 명칭을 간호사법…… 저는 사실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사'자가 '일 사(事)'자인지 아니면 간호사 직역에 대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인지, 사실 앞쪽일 것 같은데 간호 업무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더 간호사·간호조무사……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간호 업무의 영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간호법에 담아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처음부터 준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안이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굳이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냥 편하고 쉽게 그리고 좀 더 우리 국민들께 간호라는 좀 포괄적인 법을 통해서 제공돼야 될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제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담기는 것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국민들께 필요한 영역을 담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훨씬 더 지금 시대에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간호협회에서도 간호사법으로 수정 제안한 것으로, 그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간호조무사협회도……

사실은 가장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인데 이 두 직역의

의견도 저는 비중 있게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법 이렇게 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 ‘사’ 자가 무슨 ‘사’ 자인가요?

○서명옥 위원 ‘일 사’ 자가 아니야.

○김미애 위원 ‘일 사’ 자가 아니라……

○이수진 위원 ‘일 사’ 자를 의미하는 거지요? 한자로 ‘일 사’ 자를 넣어서, 뭐 그런 얘기 아니고……

○김미애 위원 그 ‘사’ 자가 아니라 간호사의……

○이수진 위원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서영석 위원 ‘일 사’ 자를 넣었어, ‘일 사’ 자.

○이수진 위원 ‘일 사’ 자라는데요?

○서명옥 위원 ‘의사(醫師)’ 할 때 ‘스승 사(師)’ 자인데, 국가에서 자격증을 부여한 엄중한 ‘사’ 자예요. ‘일 사’ 자가 아닙니다.

○이수진 위원 ‘일 사’ 자라고 되어 있는데, 약사도 그렇고 다 ‘일 사’ 자지요.

○김미애 위원 ‘사’ 자가 다 달라.

○남인순 위원 간호협회에서 ‘사(事)’ 자를 의미하는 ‘일 사’ 자로 온 거예요.

○서명옥 위원 그래요?

○서영석 위원 ‘일 사’ 자로 온 거예요, ‘일 사’ 자로.

○김미애 위원 누가요?

○서영석 위원 간호협회에서 온 게.

○전진숙 위원 간호협회 의견은 ‘일 사’ 자입니다.

○남인순 위원 간호협회에서 ‘일 사’ 자로 왔어. 간호사법에도 간호사 ‘일 사’ 자로 왔다니까.

○김미애 위원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남인순 위원 간호협회에서.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지.

○김미애 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

○이수진 위원 그러네. 한자로 ‘일 사’ 자로 되어 있네.

○서명옥 위원 아니야, ‘스승 사’ 자야.

○김미애 위원 그건 그분들의 실수 아닐까요?

○서영석 위원 뭐만 하면 실수래.

○서명옥 위원 그건 보통 실수가 아니야, 자기 스스로 격하시키는 건데.

○이수진 위원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일 사’ 자랑 직역 그 ‘사’ 자 구분을 못 하게?

○김미애 위원 아니, 그건 아닐 거 같아요.

그렇기는 하네. ‘일 사’ 자로 온 건 맞네. 우리가 바꿔 드리면 되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장님……

○소위원장 강선우 차관님.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지금 대체로 위원님들 의견들은 좀 나오신 것 같고요. 제가 좀 뒤에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다른 조문 검토가 안 되니까 다른 조항을

먼저 검토하시고 내용을 먼저 스트림라인(streamline)한 다음에 이 제명은 맨 마지막에
같이 논의를 좀 모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제명 관련해서 꼭 지금 의견 주셔야 될 위원님들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강선우** 그러면 목적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목적 조항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그 조항이 다른 관련 단체의 이견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현재 간호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 산업현장, 재가 등으로 풀어서 열거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24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제3조에 따르면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 그다음이 보건의료기
본법과 의료법 등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 간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용순위 두 번째의 다른 법률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할 다른 법률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정부 측 의견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지금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신 대로 이 법에…… 보통 법안
을 만들 때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현장 법 적용에 있어서 명확한 제
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은 반
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자구 수정 의견도 주셨는데 추경호 의원안에 보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호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
하게 넣고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에 따른다라고 하는 조문을
넣음으로 해서 간호법과 의료법, 기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개호 위원님.

○**이개호 위원** 차관님, 간호법 법안 내용 중에 PA, 그러니까 진료보조원은 정부가 반대
를 하시는 거지요? 그런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아닙니다. 그것은 찬성합니다.

○**이개호 위원** 찬성합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이개호 위원** 그러면 지난번 21대 말기입니까, 끝날 때 개정됐던 간호법에는 PA 제도가 어떻게 규정돼 있었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때는……

○**이개호 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21대 조항에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이개호 위원님께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등 간호사의 업무 관련된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

○**이개호 위원** 예, 그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김미애 위원** 뒤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서명옥 위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그런데 제 의견은요 자구 수정 의견보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어떤 법률인지를,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의료법보다 다른 법률을 우선 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인복지법인가 그런 데서, 인원 배치에 관해서는 그 법을 우선할 거면 그것을 좀 명확하게 다른 법률의 규정을 써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안 그러면 의료법과 다른 법률 어떤 게 우선하는지가 또 혼동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김미애 위원** 그래서 아까 차관이 설명하기로는 3조에서 ‘간호에 관하여’를 집어넣으라는, 그다음에 3조에서 ‘간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김미애 위원**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간호에 관하여를……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그것은 지금 이 법의 적용 대상 전체를 말하는 것고요. 지금 여기서 법률 적용 우선순위가 3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이 법이 있고 다른 법률이 있고 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다른 법률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도 없으면 의료법을 한다는 것인데 그 다른 법률이 어떤 법률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게 모든 간호 업무 전반은 아닐 테니까 어떤 경우에 다른 법률을 의료법보다 우선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놔야 집행상 혼선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남인순 위원**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내시지요.

○**서영석 위원** 그런 의견이면 이 조항 자체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아니요, 그 조항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법률이 중복돼서

이게 저쪽이 될 수 있으니까 필요한데……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복지부와 상의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다음번 회의 때 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등 간호사의 업무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선우 의원안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도 진료의 보조 등의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는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업무 범위 및 한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하위법령에서 모두 열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7쪽입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 제외와 관련해서는 법 문언상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 일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의료기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의료기사, 약사 등 타 직역들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중 투약 용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었으므로 투약 용어 사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진료지원 업무를 간호사 업무로 규정한다면 별도 조문이 아니라 안 제11조(간호사의 업무)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체계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모든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숙련된 간호사에 한해 수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요건을 법률에서 한정한 후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박민수 차관님.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지금 강선우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에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조항이 각각 있는데요. 우선 진료지원간호사 조항을 좀 분명하게 두고,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분명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강선우 의원안은 그런 관점에서 명확도를 좀 분명하게 하는 것이, 추경호 의원안이 조금 더 낫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쭉 열거를 하다 보니까 임상병리사회랑 약사회 등에서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수정안을 생각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된 용어들을 나열하기보다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는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정안을 내서 각 직역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좀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근거도 분명하게 하는 이런 수정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차관님, 현재 이렇게 급박하게 의료대란이 생기고 또 그 해법으로 전담 간호사 이런 규정을 두고 싶어 하시는데 뒤에 간호사면허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전문간호사 이렇게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자격 인정에 대해서도 있고.

실제로 환자들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병원 현장에서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이 있고,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런데 현재 전문간호사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PA 간호사 제도를 법제화한다고 하면, 오히려 좀 경과기간을 둬서 전문간호사로 만드는 게 훨씬, 나중에 괜히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담간호사라는 것은 법 안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으나 그래도 경과기간을 둬서 전문간호사 제도로 그렇게 포함시켜서 정비하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맞는 절차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 말씀도 저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문간호사는 제도상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굉장히 적고요.

그런데 지금 PA 역할을 하고 있는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최근 통계는 한 1만 3000명 정도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고,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그분들이 좀 안전한 법체계하에서 소송 등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2월에 비상진료체계 하면서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업무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명확하게 이것은 간호사의 업무고 이것은 의사의 업무다 이렇게 칼로 물 베기를 하기 어려운 영역들을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통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판단되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앞으로 하나하나 사례들을 쌓아 가면 좀 더 분명하게 업무 범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는 그게 더 부합하는 법령 아닌가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런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부령으로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을 좀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분명하게 정해 나가는……

그러니까 입법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명확하게 다 정한 다음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법에 근거를 두고 추후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해 나가는 과정, 이런 입법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이주영 위원님 먼저 손 드셨고 그다음에, 하시고 김윤 위원님 하실 게요.

○이주영 위원 지금 이 진료영역에 대한 것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수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전문간호사에 대해서 저도 사실 대단히 공감하는 바인데 지금은 간호사의 업무가 전문간호사가 있고 지금 전담간호사가 제도화되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일반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간호사의 전문성과 그리고 진료영역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간호사 자체 직역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데도 저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PA 업무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강선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추경호 의원안에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상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를테면 부목 하나를 댸래도 위치에 따라서 부목을 대는 방식이 다르고 골절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고 개방성일 때와 비개방성일 때가 다르고 그리고 소아일 때와 성인일 때가 다 다르고, 이게 골절에 대한 부목을 대는 행위 이렇게 하나로만 했을 때도 그 경우의수가 너무나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정맥 약을 쓴다 이럴 때는 반감기가 30초도 안 돼서 의사, 간호사가 양쪽에서 잡고 한꺼번에 슈팅을 한다든가 이런, 굉장히 이걸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나씩 다 하위법령에서 열거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서는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제가 간호사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간호학과 교수님과 이번 주에 만나 보기도 하고 통화도 정말 많이 해서 간호사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포괄적 지도나 위임이 있을 때 법적으로 보호되는 장치가 있거나, 아니면 의사들이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것으로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조항이 먼저 있든가, 아니면 응급의료 전반에 대해서 모든 의료계 직역에 대한 보호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오면 아무래도 간호사 입장에서도 업무에 투입되기가 훨씬 가벼운데 지금 이렇게 포괄적 위임이라고 되어 있거나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으면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은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이 소송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간호사에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직역에 대한 구분도 사실 의사협회 쪽에서는 의사 쪽을 침범할까 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현장 간호사들과 일해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건 하방으로

더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오히려 조무사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그냥 일반 보조인력들이 하는 일까지도 이 위임에 따라서는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지도나 혹은 처방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지금 여기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보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사실상 사람을 돌보는 거의 모든 것이 포함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제가 간호사들과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취지는 정말 좋지만 혹시 잘못 활용되거나, 특히 지방에서, 여기 앞쪽에 보면 지역의료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재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사실상 아주 헐값으로 간호인력이 뻥뻥이를 돌거나 할 수 있는 사실상의 간호사 깍두기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

그리고 간호사의 숙련도라고 했지만 이 숙련도도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모두 결정이 나고 또 무면허 의료행위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는 한 이건 사실은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사들을 온갖 것에 다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각각의 명칭이나 정의 그리고 업무영역에 대한 것이 지금 논의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 차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님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 소위 지금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에서 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별도의 자격으로 인정하실 생각이신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현재는 별도 자격은 아니고 저희가 3년 이상의 임상수련과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업무 범위는 병원에서 간호부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부가 큰 골격만 주고요. 그 골격 안에서 세부적인 것, 아까 이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행위도 구체성이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명문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그 업무를 정해서 하도록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 위원 보통 우리가 아는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지금 진료지원 업무라고 하는 소위 전통적으로 의사가 하던 업무와 간호사가 하던 업무 그 사이에 있는 일부, 간호사들이 교육받고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를 전문간호사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 생각은 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도기적인 제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간호사와 별도로 진료지원간호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것은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자격요건과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윤 위원 그런데 그게 전문간호사하고는 별도의 제도로 생각하신단 말씀이신 거지

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지금의 전문간호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이나 이런 제약이 너무 되어 있어서……

○**김윤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학력 제한 같은 것을 지금 충분히 우리가 만드는 법 안에서 풀어 나갈 수 있다면, 만약에 학력 제한이 없다면 진료지원간호사는 전문간호사로 발전·통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식의 PA 제도랑은 조금 다른 게요 미국의 PA 제도는 반드시 간호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별도의 직역입니다.

○**김윤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간호사 중에 특수한 간호사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윤 위원** 만약에 지금 복지부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진료지원간호사라고 하는 것을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과도기적인 인력이고 궁극적으로는 전문간호사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통합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 법안에 들어와야 되는 진료지원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 관한 내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상세해야 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전문간호사와 관련된 조항들이 이 법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지금 시범사업 안에서 굉장히 폭넓게 정의되어 있는데 진료지원간호사들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간호인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자들까지 의료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과정, 업무 범위, 그 교육과정과 업무 범위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체계까지를 포함해서 법안이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그냥 ‘기존에 간호사가 하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 범위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규정 하나만을 넣는 것은 아주 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들이 숙련되지 않은 책임질 수 없는 업무 범위로 내모는 게 실질적인 효과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수진 위원님, 아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제도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다 구체적인 법체계를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박민수 차관님 하시고 그다음에 서영석 위원님 하시고 김미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과 이것을 조율해 나가야 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진료지원간호사라는 것은 제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존재하는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시범사업의 구조를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찾아지지 않은 관점에서 법령으로 어떤 부분까지 여기다 넣어야 될지 사실은 저희도 내용을 아직 구체화

해서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김윤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전문간호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20년 넘게 미국과 유럽에서 발전해 온 제도고 그 제도가 교육과정, 자격의 인정,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관한 업무 범위의 설정, 그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 내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에 관한 법의 내용이 외국법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 뭘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다른 나라의 법은 왜 보나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해서 운영되는 간호사들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런데 그 제도로 현장에 있는 PA들을 다 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판단이고요.

○**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전문간호사 제도를 그대로 들여 오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전문간호사 제도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외국에서 이미 수십 년간 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담아서 법을 만드는 게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길이고 환자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서영석 위원님 하시고 김미애 위원님 하시고 이주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전문간호사, PA를 합법화하자 이런 취지인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우선 좀 유감을 표하면 지금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연 법안이 올라온 건데, 정부가 애초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 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이게 저희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요.

○**서영석 위원** 하여튼 뒤늦게나마 복지부가 이렇게 수정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전문간호사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제도화하지 못했던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전문간호사를 대통령령……

○**서영석 위원**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진료보조에 대해서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면 될 텐데 그걸 복지부가 안 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전문간호사 제도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건 현재 존재하는데 지금 그것과 별도로 PA라고 해 가지고 주로 수술방이나 이런 데서 의사 업무의 일부를 보조하는 간호사가 존재했고 그런 법령 체계하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고 제도화하자 이게 취지고……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21대에도 계속 얘기한 게 PA에 대해서 합법화하고 그

것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업무 범위를 지정하자……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대령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법체계상 안 맞다고 생각……

○**서영석 위원**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왜냐하면 모법에 근거가 있어야만이……

○**서영석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모법에 근거를 두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세부적인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렇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에서 제시한 것은 모법에는 근거만 두고 상세한 것들은 대령으로 위임을 해서 우선 정하자는 거고 지금 김윤 위원님은 그것을 법률에 다 상세하게 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대령을 정할 때, 부령을 정할 때 그런 시범사업의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법령상 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상세하게 정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은 복지부가 충분하게 대령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 업무 범위에 대해서 준비돼 있지 않은데……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렇게 모법에 덜렁 넣어 놓으면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의 소지가 좀……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런데 위원님, 현재 이게 없으면 그런 말씀이 맞는데요,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뭔가 근거를 제시해 주려니까 모법에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만 제시해 주고 대령으로 그걸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을 구체화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 가지고 축적이 돼 있으면 논의를 하는 데 훨씬 더 진행이 빨리 될 텐데……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지금도 시범사업에 있는 골격은 있는데요, 그건 자료 나중에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 갖고만으로는 현장에서 완벽하게, 명쾌하게 해석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우리가 진료지원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남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이러한 현상이 있어 왔는데 해 주지 않은 겁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소위도 빨리 좀 구성 돼서…… 이분들이 특히나 이 상황에서 요구가 더 거세고 또 우리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는데 기왕이면 그 제도 안에 이것을 포섭

시키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 싶은데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청문회 이름까지도 비상 상황으로 전제하고 개최한 마당에 언제까지 전문간호사 제도를, 좀 제대로…… 이거 또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진료지원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제도 안에 포섭시키기 위해서도 상당히 디테일한 구성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행 전문간호사 관련한 것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입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김미애 위원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문간호사 자격 구분이 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등등 해서 열 세 가지 분야로.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김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진료지원간호사는 이렇게 딱딱 똑 부러지게 나뉘어진 전문간호사 제도에 포섭시키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과제로는 보건복지부의 과제로 가지고 계속 이걸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말을 계속한다는 것은 과거에 수십 년 동안 놔둔 것을 그대로 또 이어 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이 있는 현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예견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없도록 그런 것도 우리 법에 담을 수 있으면 저는 담아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가, 법에 다 담을 수 없고 전문간호사처럼 영예, 부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맞습니다. 맞고요.

궁극적으로는 김윤 교수님 지적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전문성과 분명한 자격요건 이런 것들, 퀄리티에 대한 분명한 그걸 갖추어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갖춰야 되고요 저희가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는 그간에 제도가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니까 그냥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했다 그럴까요, 이랬는데 시범사업을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면서 현장에서 조금 분명하게 의사의 업무와 그렇지 않은 것들로, 그러니까 대행할 수 있는 업무로 구분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논의를 해 가면 좀 분명하게 하는 과정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의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우리가 손에 만질 만큼 분명해진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전문간호사 제도하에 하나의 특화된 형태로 다시 전환을 해서 그렇게 제도화를, 저는 2단계로 그렇게 입법을 하는 게 현실론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지금 첫 번째는 현장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법의 테두리 안으로 데려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실용적인 관점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진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직역에 대한 논의도 마무리되지가 않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일관된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병원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PA들이 활용되고 있느냐면 소변 줄만 전문으로 끼는 PA, 드레싱만 전문으로 하는 PA 이런 식으로 결국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비용이 효과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입장에서도 PA로 몇 년을 일했지만 본인이 간호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전문성이 이어지거나 그 이후에 이직을 할 때 전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의사를 양성하는 입장에서도 인턴이나 레지던트 1년 차들이 그런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서 배워야 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의사 양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도 침해되고 소모되고 의사 양성에 대한 교육 영역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침해가 되는 거예요.

전문간호사에 대해서 아까 김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영역에 대한 확실한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간호사 직역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PA의 경우에는, 사실 국가가 인정한 하나의 직역이 통일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력을 가졌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건 하나의 이름으로 묶는다는 것은 보건의료를 위하여거나 일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정부 정책상 편의를 위해서 묶어 놓고 혹시 의료 공백이 생겼을 때 아무 업무에나 일단 끼워 넣겠다는 걸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거든요.

지금 차관님께서 계속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데, 이 시범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의정 갈등 시작이 되고 2월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 시작은 혹시 언제부터 하셨던 겁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시범사업 계획이요?

○이주영 위원 예. 제가 알기로 이게 말만 나왔지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었다고 알고 있고 이번에 의정 갈등 이후로 좀 급하게 진행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급하게 된 건 맞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걸 제도화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었고요.

○이주영 위원 그런데 전문 직역에 있어서 제도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통일된 교육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있어야 됩니다.

○이주영 위원 최소한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은 지금 같은 의정 갈등이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 상황을 전제로 해서 교육과정부터 신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아까 김윤 위원님께서도 전문간호사 양성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일원화가 되어야지 PA라는 뭔가 통일되지 않은 직종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이건 정책적인 직역이지 전문 직역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정부의 편의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호사들을 내모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이걸 일하는 분들이 불안해하시니까 법적 근거를 남기고자 하는데 이것은 사실 업무영역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오히려 법적으로는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PA로서 거의 전문간호사급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인증 평가 기간에 막 숨어 계시고 아래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업무한 것을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키려면 오히려 전문간호사급으로 적어도 일관된 교육을 받고 그래서 PA들이 이 영역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세대에서든 인정이 되어야 그 PA들이 그다음 이직을 하거나 직역 선택을 할 때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편의에 따라 직역에 대한 구분 그리고 직역에 대한 임명 아니면 직역이 하는 일에 대한 것을 해 놓으면 이 PA들이 3년 뒤 5년 뒤에는 일을 하려야 할 수가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런데 지금 법령에서는 그런 조항들이 없지만 저희가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주영 위원님 설명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일된 교육 그다음에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갖춰서, 그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을 통과하면 PA 업무를 하도록 하고 그 PA 업무를 한 간호사가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해도 동일하게, 동일한 자격을 가진 것처럼 저희가 인력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사실 전문간호사와 이원화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런데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손에 잡힐 만큼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주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설정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현재 일하고 있는 PA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게 사실 앞뒤가 안 맞긴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러니까 그분들도 소정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분들은 이미 병원에 등록을 저희가 시키려고 하고 있고 등록이 되면 그분들은 부칙 조항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간략한 수준의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해당하는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형태로……

○**이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입니다. ‘부칙으로 간략한 교육을 통해’ 이런 것들이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전문 직종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그 세대의 간호사들이 인정 못 받는 거거든요, 그 시기에. 예를 들면 의사들도 이 시점에는 국시 쉽게 통과시켜 줬다 그러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요즘 얘기하실 때 전문 직종들이 어떤 생각으로 일하시는지를 조금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간호사들이랑 굉장히 많이 친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들이 원하는 건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 그런데……

○**이주영 위원** 그리고 법적인 책임이 불안하다는 건데 이렇게 간이로 정부가 급히 필요하니까 빨리 인정시켜서 어디든 병원에 투입시키겠다 이런 취지는 좀 곤란하지 않나.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이쪽에서 10년 넘게 일하시는 PA들도 계십니다. 저도 현장에서 만나 봤고 그분들의 자기 직무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처음서부터 다시 다 교육받고 하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미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출제위원급에 해당되는 실력을 갖추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행 조항을 통해 가지고 흡수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지 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마음껏 쓸 수 있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순서가 남인순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그다음에 김윤 위원님.

○**남인순 위원** PA 관련해서 법에다 담으려고 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인데요, 잘 정리가 안 되네요. 잘 정리가 안 돼서 이것 무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자격과 관련해서, 그러면 정부도 앞으로 전문간호사들이 이걸 담당하게끔 하고 자격 관리도 하고 교육 관리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법에다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냥 의지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법에다 담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 관련해서는 지금 대안을 28페이지에 보건복지부 의견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쭉, 뭐 ‘검사·진단·투약’ 이런 행위 열거는 하지 않고 또 직역단체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료 및 치료행위’로 수정한다,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포괄적’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일반적’이라는 단어로 변경,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수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강선우 의원님 안의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의료기사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안인가, 정부안에서는 보니까 그것을 진료지원 업무 하는 것에서만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자격부터, 업무 범위부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좀 정리해 주셔야 저희가 오늘 대안을 갖고 이 부분을 잘……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가 오늘 합의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심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정리를 해 줄 수 있으십니까, 쟁점들을?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다음 회의까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지금 ‘의료기사 등의 업무 제외’ 이 부분은 아직 논의가 안 된 부분인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는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로 정의를’ 이런 말이 없어도 당연히 그것은 의료기사의 업무입니다,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고. 괜히 검사·투약 이런 말들을 쓰는 바람에 마치 간호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가 돼서 저희가 그걸 다 빼 버린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크게 저는 쟁점이 남아 있지 않고 굳이……

○**남인순 위원** 아니, 차관님, 그건 정부의 생각이고 우리가 21대 때 간호법 사태를 겪어 봤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갈등이 막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것이 또 확인되어지는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심사를 하지 정부 얘기만 갖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조정하면 그 직역, 의료기사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동의한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었거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래서 그게 법 통과에 그 조항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넣어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의료기사만 있나? 그게 아니라 의료기사·약사·한의사·치과의사, 다른 직업들이 또 다 열거가 돼야 됩니다. 입법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은 제가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없어도 당연히 해석이 타 법이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조항인데 그것을 달아야 된다고 그러면 의료기사 외에도 응급구조사 다 이렇게 또 달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넣어도 큰 이슈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넣나 안 넣나 사실은 현장에서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법령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로 기사들 이야기 들어 보면 병원 급 이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꽤 크고 해서 업무들이 다 나뉘어져 있고 직역 침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의 병원, 의원급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건데 그것은 법령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집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차관님, 어쨌든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죽 하셨고, 이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서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시범사업 실시한 경우에 그 결과 평가해서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 제도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래서 이 평가는 언제쯤, 2월 27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하셨는데 언제쯤 하실지? 올해 말인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우리 당초 계획이 제가 알기로 내년,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평가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좀 더 분명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연구용역은 돌입을 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아쉬운 게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PA 간호사가 음성적으로 병원에서 활용되었던 걸 모르시지는 않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맞습니다.

○**이수진 위원** 실제로 PA 간호사 법제화가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필요한 영역에, 그게 의사가 해야 될 일인지 전공의의 일인지 간호사 일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의료 현장에서는 결국 그 문제가 발생을 했고 환자들을 위해서 당장, 병원이 24시간 돌아가는 곳 아닙니까? 환자들 밤에 문 닫고 집에 퇴근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건 명확하고, 실제로 저는 좀 아쉽습니다. 법에도 명시돼 있고 이런데 진작에 진행을 해서 이게 전문간호사 제도로 가는 경과 단계로서…… 사실 제도라는 것들이 그냥 막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PA 간호사 관련해서는 수십 년은 아닌 것 같고 한 십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검사실이나 수술방이나 그런 데 한 십여 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몇백 명으로 늘어나는 걸 보면서 사실 병원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환자들도 실제로는 의사들한테 처치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 복지부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방치를 해 놓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PA 간호사들 노동조합 통해서 어렵고 힘든 고충이 접수가 됐는데, 물론 가장 첫 번째가 ‘무서워 죽겠다.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하라고 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 시범사업 하라고 하면서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의료기관장이 구성할 수 있게끔 복지부가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이수진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래도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이 관련해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그것 관련해서 시행령에다 담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시행령이 아니고 저희 시범사업 지침에 보면 판례상 분명하게 금지된 항목들은 하지 못하게, 안 하는 걸로……

○**이수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위원들한테 제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전문간호사 제도라는 게 이미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그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평가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논의를 지속할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정확하게 뭘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소위원장 강선우**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 먼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제가 한 발언이 혹시 이걸 그냥 현재 상태로 유지하자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오해하실까 봐,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소위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를 합법화하자고 주장을 해 왔고 작년에 간호법 제정 관련해서도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서 이 문제를 절실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간호법이 빨리 통과돼서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보호받지 못했던 PA 간호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토를 다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복지부 간호인력정책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차관님께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를 자격으로 만들 생각이냐?’ ‘그럴 생각이 없다’, ‘이것을 전문간호사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간 단계, 과도기적인 단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어떤 인력을 만드는 게 환자를 보호, 그러니까 간호사도 보호하는 일이 아니고 환자도 보호하는 일이 아닐 것 같다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차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전문간호사 제도로 가는 중간 과정에서 법안에 담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걸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궁극적으로 전문간호사 제도로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법 안에서 명확하게 보여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과장과 오늘 차관님이 하시는 얘기가 다른 것 중의 어느 걸 믿어야

될지, 이게 이 제도로 갔을 때 간호사는 훈련받지 않은 업무를 떠맡고 그 업무를 하면서 환자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의구심, 걱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 과장 설명하고 차관 설명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부처의 의견이 정리되는 것은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서, 제가 오늘 소위원회에서 드리는 답변은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부처 입장으로 정리가 된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차관의 말을 듣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웃음소리)

조문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자격요건과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격화를 하고 한 번 그 과정을 통해서 PA가 되신 분들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이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실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걸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걸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안건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하위법령 만들 때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그게 한번 하위법령에서 제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다음 번에 개정을 할 때 그것을 법률로 다시 상향을 해 가지고 그렇게 넣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조문에다가 이행 과정을 담았으면 좋겠다, 담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 얘기를 신뢰해야 될지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행 조항을 만드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두 개의 조문 정도만 추가가 되고 이 전체의 시행령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간호사의 연결고리, 업무 범위, 그 전체를 규율하는 거버넌스의 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최보윤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주영 위원님 하실게요.

○**최보윤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하기로는 대한간호협회 쪽에서도 의견을 준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의견보고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차관님께 대한간호협회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주영 위원님이나 김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입법 공백하에서 이걸 무한정 논의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는 어떤 의견, 타임 스케줄을 갖고 있는지, 다른 관계 협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먼저 협회가 자기네 의견을 강선우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그다음에 복지부 의견을 죽 정리하고 그 옆에 간협의 의견이라고 해서 정리를 한 것들이 조문별로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PA 제도화 관련해서는 복지부 수정의견에 동의한다고 표시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타 대부분의 것들이 다 복지부 의견에—복지부 수정의견이지요—동의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다른 조항, 어떤 것은 강선우 의원안 동의, 어떤 것은 추경호 의원안 동의 이렇게 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수정한 그 의견에 동의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보윤 위원 저는 PA 쪽……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PA도 복지부 수정안에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보윤 위원 논의 시기에 관련해서는 혹시 의견……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최보윤 위원 논의 시기가, 어쨌건 저희가 무한정 이걸 또 논의할……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아, 논의 시기요?

○최보윤 위원 예, 그러니까 협회 의견은 어떻고 보건복지부 의견은 어떤지.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저희는 지금 현장에서 이미 이게 십수 년간,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2011년 정도 외과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미 존재하고 또 최근에 많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만들어 줄 필요성은 너무나 크다. 이렇게 해서 조금 조문이 불완전해 보이더라도 저희들한테 근거 조항을 주시면 저희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때 연구용역 한 걸 좀 참고해서 하위법령을 만들고 수정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보윤 위원 어쨌건 좀 신속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맞습니다.

○최보윤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아까 판례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해서 정리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의뢰가 가는 것만도 사실상 거의 매월 50건 이상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의료 하나하나의 세부 내용을 명문화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아마 이를 전인가 전문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검토 자료에 보면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이렇게 해서 업무 직역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비교된 걸 보면 전담간호사가 사실상 기관 삽관, 기관 발관 그리고 골수천자 이정도로 아주 침습적인 것 외에는 전문간호사 영역을 거의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개별, 그러니까 개인으로 일하는 PA들이 법적 보호를 원하는 거지 개인 PA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것을 시키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싶은 거지 법적으로 허용된 것 내에서 다 하게 되는 걸 원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 허용한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있지만 아무튼 20년 운전한 분들에게는 임시면허를 주자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운전면허시험을 치게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아까 김윤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간호사 제도 같은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오히려 전문간호사의 종류를 다양화한다든가 그 영역을 넓힌다든가 기준에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방식 그리고 존재하는 그런 절차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다…… 헤테로

지니어스(heterogeneous) 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면이 하나로 엮이는 것이 법제화가 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면에서 저는 이것을, 물론 과도기적인 걸 넣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런 것은 저는 법으로서 명문화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한다고 그래도 저희가 그걸 하위법령에다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과 어떤 큰 틀의 방향만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결국은 지침이나 내지는 개별 위원회 같은 데서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저희가……

○**이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PA들을 지금 법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실론적으로는 어떤 업무를 의사 지시로 하게 됐는데, 자기는 지시에 따라서 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걸 놓고 또 소송을 당한다거나 이런 사법 리스크에 오픈이 돼 있고 그러니까 대놓고 자기가 그 일을 한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이것이 현재 진료지원간호사의 현실이다 보니 저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가급적이면 좀 가르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나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좀 구체·타당성 있게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 가는 과정이 저는 시범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이게 조금 더 분명해지면, 그리고 병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시키다가 이제는 ‘그것은 의사 업무인데’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그것은 안 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명하게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러니까 축적이 되면요,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고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들이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으로서 그 기능도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김미애 간사님.

○**김미애 위원** 이게 핵심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는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현행 의료법 2조 2항 5호에 보면 간호사의 업무규정이 있습니다. 이 업무규정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실제 현장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가 때때로 소송에 말리기도 하는데 그런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놓였으면 하는 것이고 그것은 환자 입장에서도 저는 당연히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환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주영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당연히 저는 맞다고 보고 더 나쁜 방향으로 입법이 되면 안 되겠다 싶은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방향으로 입법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김미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는 거라면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야 될 과제이고 또 향후에 전문간호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앞으로 가야 될 과제라면 그 것 역시 마찬가지 과제라고 저는 보지만 오늘 여기에서 이걸 다 해결하고자 하면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면 그 방향으로 가고 또 개선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혹시 관련 의견 더 있으실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자료 38쪽입니다.

두 제정안 모두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현행보다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강선우 의원안에 따르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곧바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간호학원의 교습 과정 등 별도의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그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요구한 학력 상한 철폐 의견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의 경우에도 각호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에 전문대학 졸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추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차관님.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 조항을 지난 간호법이 그대로 가져왔고 그때 저희가 학력 제한이 철폐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재의요구 사유로 하나 삼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강선우 의원안을 보면 거기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 가지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간호조무사가 되는 루트는 강선우 의원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현행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다른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학원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시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학력 제한을 좀 철폐해 달라는 간호조무사협회 의견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두어서 그런 요구조건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개호 위원 그러면 간호협회는 어떤 의견인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간호협회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 추경호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개호 위원 의견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소위원장 강선우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전에 전문위원 보고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여기 보시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는 데 지금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한 사람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설치된 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이 제정이 되면, 요건이 되면 설치하려는 움직임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 있는데 안 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대를 두자라고 하는 것으로 맥락 속에서 읽힐 수밖에 없는 조항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그 부분이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 현재 없는데 쟁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걱정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전문대의 졸업자가 지금 없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그런데 지금 관련 단체 의견 보면요 특성화고 학교 쪽에서도 전문대까지 풀어 주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해 놓은 그것에 좀 배치가 된다라고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예전에 설치하려는 움직임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대를 나와도, 그 전공을 해도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하게 학원 등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 실익이 없어서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현재는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단체 의견들에서 설치 우려 의견은 상당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성화고 관련한 교육계의 의견은요 협행대로 해 달라는 얘기지요. 협행은 특성화고는 졸업하면 그대로 자격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협행 의견입니다. 협행 유지 의견입니다.

○남인순 위원 협행 의견이지요. 협행 유지 의견이고요. 여기 38페이지, 39페이지에 이르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저도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데가 있나라고 저는 알아보려고 했는데 없네요. 지금은 없는 거지요, 전문대학교에 이런 과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없습니다,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2010년도에 논란이 됐었던 사례가 있어서…… 현재 없는 건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소위원장 강선우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논란이 많아 가지고 못 만든 것 아니에요? 전문대학에서 학과를 못 만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못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옛날에는 있었는데요. 이게 시험을 못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김미애 위원 있으나 마나지.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의료법 개정을 2015년에 하고 그때 간호조무사를, 교육훈련기관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지정평가제도를 두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보건복지부가 인력 양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지금 얘기한 특성화고 졸업자 그다음에 학원 이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평가제도를 둬 가면서까지 인력에 대한 관리를 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그건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력에 대해서 관리해서 매년 나오는 배출 인력이 3만 명이나 돼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서영석 위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간호조무사 인력을 양산하면서도 실제로 그 평가 보고서를 보면 관련된, 양성기관에 대한 의견들은 다 반대의견인데 이 문제를 유독 간호조무사 쪽에서만 찬성한다고 해서 이렇게 문호를 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갈등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실제로 제가 지난 21대에도 지적을 했지만 2022년 합격자 중에 대학 졸업생이 41%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학력 제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 그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직역 중의 예시를 보면 미용사하고 조리사가 있는데요. 미용사하고 조리사가 되는 루트를 보면 특성화고를 나와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해당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미용사나 조리사도 그렇게 지정평가제도를 둬 가면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설치하게 되면 그 학교는 그 직역의 퀄리티를 요구하는 수준을 갖추도록 하는 인증평가가 다 있고요. 그게 의과대학서부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춰야만이 해당되는 학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하면 이 국시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간호조무사만 지금 특성화고를 나와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대학은 없는 것이지요. 대학은 없으니까 결국은 민간 학원을 가지고 학원을 이수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이 구조로 되어 있으니 조무사회의 요구사항은 다른 직역과 유사하게 우리도 전문대학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현행 의료법은 그런 측면에서 좀 학력 제한이 있는, 현법상의 형평 조항에 위배되는 그런 조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학력 제한이 없고 대학을 졸업해도 다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아니요, 대학을 전혀 다른, 그러니까 다른 학과를 졸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경제학과 나왔는데 경제학과 졸업해서 학원 가서 조무사학원 다니고……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차관님 얘기는 인력 양산 구조를 투 트랙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특성화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학원 이수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지금 현재가 투 트랙인데, 특성화고를 나와서 바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을 나와서 학원을 가거나. 그러니까 학원 내지는 특성화고 2개의 트랙이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전문대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트랙을 더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두자고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 반대의견을 낸 겁니다. 기존의 학원협회나 또는 특성화고 이런 데에서는……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인력 양산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즉자적으로 될 일이 아니고 간호인력 전체에 대한 어떤 양성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하고 그것이 전제된 속에서 이 제도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가 되도록 하는 문호를 많이 열어 주는 게 제 생각에는 이 갈등 구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봐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를테면 양성체계를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하겠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해 온 전반적인 양성체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갈등을 더 양산할 가능성은 많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 교육부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걸 왜…… 난 정부 여당이 지금 이해가 안 가, 계속.

○**소위원장 강선우**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차관님, 저도 이 법문을 보면서 참 어색하다, 여기에 이걸 넣는 것은 정말 어색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양성기관들도 좀 반대를 하는 입장들을 보이고 또 교육부에서도 여기 보면 의견을 ‘관계부처랑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렇게 바로 넣으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게 바로 맞지는 않다.

실제로 지금 간호인력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OECD 평균, 우리가 부족한지 많은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간호조무사는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무학과를 전문대에 신설하고 거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응시를 해서 자격을 따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 안에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교육과정이라는 게 실제로 제도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런 사전에 충분한 연구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학과가 필요하다라고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그런 걸 내놓고 법에 담는 게 맞지, 교육부 의견도 듣고. 사실 법문에다가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전문대를 할지 어떨지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는데 이걸 정리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러나 학력 제한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직역의 입법례를 찾아봐도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전문대학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직역들은 다 전문대학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두고 있는데요.

○**이수진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미용사, 피부관리사, 전문대에 학과가 있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미용사하고 조리사입니다.

○**이수진 위원** 예, 조리사. 그 학과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 무슨 전문 미용사 아니면 무슨 다른, 이게 간호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잖아요. 그게 조리사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러시지, 실제로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공부도 하시고. 이것을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너무 단순화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 영역은 조금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갈 수 없고 그냥 그게 최종적으로, 피부미용사가 최종적인 것이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피부미용사도 지금은 2년제지만 나중에 4년제 학과가 나와서 또 그 학교 학사학위를 따고 박사를 하고 그다음 교수라든지 다른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지금 여기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라는 그렇게 다른 직역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강선우** 차관님, 답변하시겠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아니요, 특별히 답변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김미애 간사님.

○**김미애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지금 간호조무사가 되는 길은 현재로서는 특성화고등학교나 아니면 학원을 수료해서 응시자격을 부여받고 시험에 통과하는 건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까지 일반고를 나와서 대학에, 전문대에 간호조무사과가 있다면 거기 가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는 걸 왜 막아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전문대를 수료한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은 당사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한데 그 길을 굳이 입법으로 막아 두는 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의 위반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입법기술적으로 어느 안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주시고, 그래서 그 안이 어떤 안이 되었든 아니면 대안이 되었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관련해서 더 의견 있으실까요?

○**서영석 위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예, 넘어가기 전에……

○**백혜련 위원** 질문이 하나……

○**소위원장 강선우** 예.

○**백혜련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은 이 법안이 만약 이렇게 통과되면 전문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아니, 만약에 법안에 전문대 응시할 자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생기면 간호조무사 전문대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지금은 없는데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강선우 의원안에 따르면 생길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요.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안에서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추경호 의원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은 그것을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정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전문대를 넣는 것이라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이걸 하위법령에 그렇게 좀 모호하게 위임하는 게 맞는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백혜련 위원** 아,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7호에 더 정확하게 전문대 그것을 만약에 정부 입장이 그거면 넣자는 의견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넣을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문대를 넣을지 말지가 쟁점 사안입니다.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추경호 의원안은 그것을 상응하는 교육 수준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전문대가 들어간다고 보는 것은 간호조무사협회 의견이고 다른 단체에서는 하위법령을 제정할 때 그걸 넣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라서 이걸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백혜련 위원** 예.

그리고 차관님, 차관님한테도 질문할게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파악한, 전문대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없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입법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여기에, 이 7호 안으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대가 생길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파악해 보신 것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대령으로 나왔냐면 전문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간협이 반대의견입니다.

○**백혜련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지요, 조무사 등 재추진하는 것.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간협이 반대의견이고 그다음에 학원협회랑 특성화고 거기 현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도 반대의견이고요, 교육부도 좀 신중론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뭐냐 하면 전문대를 설치하려면 결국은 교육계 안에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론 입장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이것을 명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타 입법례를 보면 법률에 특성화고나 전문대학을 명시해 주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법률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들이 많으니까 국회에서 그런 안들이 지금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시행령으로 간 것은 그렇게 위임을 받아서 그러면 전문대의 형태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를 이어 가서 추가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김미애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해요. 이 지역에만 전문대를 출입한 사람이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대가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법들은 전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생긴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아닙니다.

○**백혜련 위원** 아니에요? 먼저 법이……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그것은 동시에 있었습니다.

○**백혜련 위원** 거의 동시?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러니까 전문대에 간호조무사학과는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학과를 졸업해도 시험도 못 보는 학과니까 사람들이 안 가지요. 그래서 그 학과가 경쟁력을 잃고 없어졌습니다.

○**백혜련 위원** 원래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그래서 법을 만들어 주면……

○**백혜련 위원** 그러면 그때 그 법이 이렇게 됐던 이유는 뭔가요? 그때 당시에 전문대에 간호조무사학과가 있었는데도 법이 이렇게 됐던 이유는 뭔가요? 간호사협회의 반대 이런 것 때문인가요, 그때 그러면? 처음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법률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간호조무사등규칙, 규칙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협회의 반대로 제도가 바뀌면서 이게 삭제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간호협회의 반대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이수진 위원** 예전에 간호실무학과라고 국제대에 하나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간호실무학과라고 실무사를 배출하고 싶어 했던 거지요, 사실은. 간호사 말고 실무사, 간호사 밑에 실무사를.

○**김미애 위원** 그런데 전문대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으니까 그 간호조무학과에 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

○**백혜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묻는 게 처음에는 원래 있었다고 한다면 법률을 만들 때 왜 이렇게 그게 없어질, 그 사람들은 시험을 볼 수 없는, 자격을 박탈하게 법을 만들었느냐는 거지요. 좀 그런 것부터 명확하게, 지금 보니까 차관님도 제대로 모르시네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아닙니다. 압니다.

○**백혜련 위원** 아니, 지금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참고로 소위 자료 42쪽에 그 입법 연혁을 실어 놨습니다.

당초에는 규칙에 있었던 건데 이것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과정에서 특성화고 등의 반대가 있어서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얘기처럼 복지부가 스스로 규정을 바꾼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서영석 위원** 복지부가 바꾼 것……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 이것은……

○**서영석 위원** 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학과를 개설할 수 없고……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법제처……

○**서영석 위원** 아니, 법제처는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학과를 개설할 수 없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마치 간호조무사 전문대를 만드는 것을 반대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해명해 보세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간호

조무사 전문대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법제처나 그 당시 교육부나 등등 여러 직역에서 반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삭제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삭제가 되었던 것이고, 그 반대의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협회 그리고 특성화하고 그리고 전문학원 이런 유관단체들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매년 3만 명이나 간호조무사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복지부가 실제로 훈련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 지정·평가 제도를 통해서 다 관리를 해요. 이게 아까 무슨 조리사 얘기했는데 넓게 보면 보건의료인력으로서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양성체계에 대해서 전반적 논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이쪽 의견이 있다고 해서 다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아니, 그 체계를 위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만약에 전문대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캘리파이(qualify)를 다 통과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체계를 뒤집자는 것은 아니고 그 체계 안에 학과를 하나, 학교체계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도록 근거를 달아 주자 하는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양성체계에 있는 사람들의 충분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전제되지 않고 모든 유관기관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유독 간호조무사만 찬성한다고 해서 복지부가 그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저는 이것은 직역의 반대·찬성 이런 것보다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관점에서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말씀하셨던 간호조무사에 관련된 전문대가 없다고 하는 이런 취지 그리고 간호인력에 대한 양성 인력체계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조금 근본적으로 두 분, 전문위원님과 복지부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대를 설치해서, 물론 전문대에서 과를 설치할 건가 말 건가 그것은, 각 대학이 어떤 선택을 할 건가에 대한 숙제는 하나 또 남아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제가 되게 궁금한 게, 계속 말씀하시는 간호조무사가 전문대를 나와서 인력이 더 확대되거나 이랬을 때 아까 간호협회는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 의사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이를테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과급효과의 장단점을 분류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 입장 그다음에 간호사 입장, 물론 학원은 거기에서, 학원 가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하겠는데 그 근본적인 약간의 장단점을 다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실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전진숙 위원** 두 군데 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의협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전진숙 위원**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의협은 간호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전진숙 위원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저는 사실 전문대에 자격을 주고 말고에 대해서 제가 찬반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21대 때도 논란이 됐었고 지금 관련 단체에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복지부가 약간 모호하게 규정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논의하자라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 전문대에 자격을 줄 경우에, 사실 지금 고등학교,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갈 수 있는 루트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그쪽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전문대까지 풀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거고요.

사실 다른 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찬반 의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의협에서는 이 법을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보완해 주실 게 있으면……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의협은 기본적으로 간호법, 법령 자체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돼서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김미애 간사님, 남인순 위원님, 김윤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리학과든 뭐든 전부 다 전문대를 가고 싶으면 전문대 가고 4년제를 가고 싶으면 4년제 가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자격을 취득하면 되는 건데 유독 간호조무사만 전문대에 이런 학과도 없다는 게, 아마 과거에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이게 논의 필요성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특성화나 학원을 가면 되고 거기에서 간호사는 대학을 가면 되는 게, 그렇게 그냥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흘러왔는데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현재 관점에서 보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도 본인이 그런 전문대가 있으면 전문대에 가서 그것을 통해서 더 전문적인 조무사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건데 법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은 어느 직역이든 풀어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더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간호조무사를 다르게 취급하는 거라서 평등권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 약간 이게 방 안의 코끼리 같은 이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간호사의 자격체계는 4년제 교육을 받은 정규 간호사와 2년제 교육을 받은 LPN—아까 실무간호사라고 표현을 하셨고—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와 같은 짧은 교육과정을 거친 간호조무사 이렇게 3개의 자격체계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데요.

그러니까 2년제 전문대의 간호조무학과를 허용하겠다는 게 간호조무사 입장에서 선택권을 더 넓혀 주고 허용하는 문제 해결 방식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업무 범위를 학원을 다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현재 체계에서 2년간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똑같은 업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조리의 문제나 이런 것과는 달리 법적으로 명확하게 허용된 업무 범위를 갖고 있는 의료의 자격의 특성상 약간 뭐랄까, 말이 되지 않는…… 그러면 왜 예를 들어서 몇 달 교육받아도 되는 것을 2년 동안 교육받게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앞서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인력의 전반적인 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하고 관련된 경력 발전에 대한 체계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이것을 간호조무사 2년제를 그냥 허용하는 단편적인 이슈만을 가지고 얘기하니 논의가 자꾸 곁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간호사 자격 전체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인순 위원 저희가 간호법을 논의하면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쟁점들을 만약에 오늘 다 논의하는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논의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것은 21대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를 했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의료대란 상황이 있고, 그런 속에서 그래도 여야가 어쨌든 현실적으로 뭔가 타협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 정리되지 않은 쟁점을 다 지금 갖고 와서 정부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PA 문제도 그런 논의가 있으면 여기 야당 위원들한테도 와서 설명을 하시고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해야 이 법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의 과정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또 오늘 논의해 보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웬만하게 정부가 조정안을 내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고 몇 가지 조금 정리할 것만 남으면 조문적으로만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가 과거에 분명히 오랫동안 논의가 돼서 안 된 쟁점들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그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한 문제는. 그런데 이것을 또 가져와서 또 논의를 하자? 어떻게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평등권 문제가 아니고요, 간호인력 양성 문제 굉장히 논쟁이 많은 이슈입니다. 이것 다 뼤히 아시면서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또 지금 처음부터 다 얘기하자고요? 입장이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직역과 관련한 문제니까 얘기하기도 지금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잠재적인,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나가자라는 속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진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 정부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간호법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과거의 쟁점까지 다 끌고 나와서 지금 여기서 뭔가 오늘 결론을 내시려고 하면 너무 욕심 아닌가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뒤로 미뤄놓고, 꼭 이번에 아니어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간호법을 독립적인 체계로 하느냐에 대한 합의…… 그동안에 계속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반대해서 못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또 입장이 바뀌셔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

접근을 해야지요. 이런 상태라면 지금 6시까지 논의하신다고 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합의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위원장 강선우** 차관님, 답변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노력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소위가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챙점을 좀 최소화해서 가급적이면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말씀도 저는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처음에 논의했던 제명하고 지금 논의하는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 이것이 이번 간호법의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견들을 교환해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소위가 갑자기 잡혀서 노력이 소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간호법이 갑자기 소위 잡힌 날 등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저희는 주말에 소위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21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의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가 갑자기 잡혀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제가 왜냐하면 이번 주에 위원님들 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전문위원님이랑 차관님께 두 가지만 짚을게요.

전문위원님, ‘전문대 간호조무사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이것은 팩트에 기초한 게 아니잖아요. 팩트에 기초한 의견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없으니까요. 이것은 어디서, 뭘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요?

○**소위원장 강선우** 아니, 여기 검토의견에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이라고 쓰셨잖아요. 그런데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거잖아요. 뭘 근거로 의견을 내셨느냐고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지금 그 안에서 1호부터 6호까지 규정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특성화고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 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대학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규정을 적용했을 때는 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아야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제 질문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소위원장 강선우** 제 질문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께 좀 여쭐게요, 차관님이랑 전문위원님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학력 제한이 있으니 학력 제한을 없애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간호

조무사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르게 트랙을 밟아야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고졸 이상이라고 명시를 한 게 학력 제한을 없앤 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도 고등학교 이상, 그러니까 대학이나 대학원, 박사라고 하더라도 관련 특성화고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아니면 학원 등에서 강의를, 수업을 받아야, 이수해야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지금 의원님 안에서……

○**소위원장 강선우** 그러니 학원에서 따로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거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그 이후의 루트를 설명을 하신 거고요. 제가 드린 질문은 이 취지가, 학력 제한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법안에 고졸 이상이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게 그러면 학력 제한을 없애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저는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해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사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소위원장 강선우** 예?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지금 현행 의료법에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한 거랑 지금 개정안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라고 한 거랑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상 대학원이나 대학 졸업자도 다 간호조무사가 현재도 될 수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장님,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아니요, 전문위원님 말씀 다 듣고 할게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같은 설명인 것 같아서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그래서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봐서 지금 ‘이상’이라는 말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보이거든요.

○**서영석 위원** 차이가 없는데 지난 논의 과정에서 마치 이 법 조항이 학력 제한을 한 것처럼 얘기를, 복지부나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거기서 학력 제한이라고 하는 전문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남인순 위원** 그런데 그게 현존하지 않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현존하지 않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걸 전문대도 가능하게 해 주면 당연히 현존할 거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인순 위원**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하셔야지요, 팩트에 근거해서.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현재는 없습니다, 전문대는.

○**소위원장 강선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걸 여쭤본 거잖아요. 뭘 근거로 이 의견을 낸 거냐고, 팩트가 아닌데.

차관님 말씀하시고 간사님 의견 들을게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현행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로서’ 이 조문을 지금 강선우 의원안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조문상으로는 ‘이상’으로 해서 제한이 없는 것처럼 표현이 됐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간호조무사가 되는 루트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다른 학력을 추가로 더 하든 말든 학원을 가서 학원을 수료한 이후에 시험을 보거나, 이 딱 두 가지 루트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루트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직역처럼 전문대학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음으로 해서 학력을 제한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은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얘기가 자꾸 혼동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간사님 말씀 듣고 말씀드릴게요.

○김미애 위원 지금 현행 의료법 80조에 보면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데 방금 차관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하고, 강선우 의원님 안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데 형식을 보면 학력 상한이 없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달라진 게 아니다, 강선우 의원안대로 하더라도 전문대가 아닌 4년제 대학을 나와서라도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면 학원을 수료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전문대에서 간호조무학과를 신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 마나기 때문에, 그 전문대를 나와도 또 다시 학원을 다녀야 돼서.

그러면 다른 직업의 경우에는 전문대에 있으면 전문대 졸업하는 것으로 응시자격이 부여되는데 최소한 그 수준으로는 해 달라는 게 간호조무사협회 의견이었고 저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자구가 졸업 이상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좀 고민을 해서 그런 길은 열어 두는 게, 대한민국의 다른 어떤 직업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전문대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게 저는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유독 간호조무사만 그렇지 않다는 데 대해서 평등권 위반이다 그렇게 봅니다, 현행법이.

○소위원장 강선우 이수진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순서로 할게요.

○이수진 위원 병원이라는 곳이, 보건의료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사실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많은, 의사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또 간호보조인력, 의료기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각자가 각자의 직역에 맞는 역할들을 하고 그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직역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런 것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무슨 직업선택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맞지가 않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가 실제 병원 현장에서 환자들이 간호조무사가 2년제 학과를 나와서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다라면 거기에 맞는 학과 신설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교육부라든지 기타 의견들 청취하셔 가지고 그 작업을 먼저 해야지, 이 간호법에다가 묘하게 정체도 불분명한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간호조무사학과 전문대학을 미리 예견하고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해요.

그리고 병원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던 제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학원을 졸업하거나 학원에서 시험 보시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졸업한 이 간호조무사들이 병원에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학과를 나온 전문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취업을 해요. 두 분의 면허가 자격이 다릅니까? 같아요. 그러면 입직경로가 다른 두 그룹이 얼마나

그 병원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지 상상 안 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라든지 다른 데서는 각각의 자격을 4년제든 2년제 보조간호사 제도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간호보조인력에 대해서도 1년이든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먼저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조사라든지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법으로 만들어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누가 봐도 다 보이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근거 조항처럼 만들어 가지고 넣는다는 것이 맞는 일인지…… 앞으로 병원 현장에서 생길 혼란이라든지 갈등에 대해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 고민하신다면요 교육부랑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이게 진짜 필요한지, 지금 간호대 입학정원도 십몇 년 동안 2배 이상 늘리지 않았습니까? 의대 정원도 늘려야 된다고 하셨고. 그럼 간호조무사 정원도 늘려야 됩니까? 늘려야 되고 수준을 더 높여야 된다, 학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내놓고 얘기하셔야지 왜 이 법에다가, 전혀 맞지도 않는데 여기다가 슬쩍 집어넣어서 근거 조항을 만드냐 말이에요.

저는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하지 마시고 외국에, 이미 미국이라든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RN이든 AN이든 APN이든 다 있어요. 다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근거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있지도 않은 전문대학을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간호조무사들을 많이 배출하면 그게 지금 보건복지부가 전체 간호인력에 대해서 가는 방향이랑 맞는지 그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이 얘기는 앞으로 병원에서 일할 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같은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입직경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소위원장 강선우** 백혜련 위원님 하시고 서영석 위원님 하시고.

○**백혜련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전문대가 있다고 한다면요 김미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당연히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먼저 사실, 현상이 따르고 그다음에 그것 규율하는 게 법입니다. 법은 항상 뒤에 늦게 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기본적인 시스템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문대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먼저 법에서 그걸 규정하는 것은 정말 좀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사실 42쪽 보면 2015년에,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보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법을 개정할 때 그때는 조무사학과가 있었어요. 보건간호조무 전공학과라는, 평택 국제대학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응시자격 여부가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거기에 응시자격이 있다 인정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때 대한간호협회하고 특성화고의 입장을 받아들였는지 어쨌든 응시자격이 인정 안 된다고 결국 한 거예요.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간호학과의 응시자격은 인정이 되고 이 간호조무 전공학과 졸업한 사람은 안 된다고 됐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입법을 할 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제 보건복지부 입장이 어떻게 보면 바뀐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문대가 생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규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아직 생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갈등 요소를 법이 먼저 넣는 것은 또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평등권 제한 얘기를 하셨는데 방금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조항은 전문대를 만들기 위한 조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대에 간호조무학과를 만들겠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조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체계였던 특성화고 졸업자, 학원 이수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들의 학원 이수자들에 대한 것들을 부정해야 되는데 이들에 대한 아무런 논의 과정이 없고, 또 이들은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새로운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 이것을 입법으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게 평등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차관님, 답변하시겠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 가지고 추가 답변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간사님.

○**김미애 위원** 이 법을 법제화한다고 해서 전문대가 만들어질지 아닐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여전히 간호조무사가 되는 방법은 특성화고 또 일정한 학원 수료해서 응시자격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과가 있어도 또 학원을 되돌이표로 가야 되는 그 문제를 제거해 달라는 게 또 이런 직역을 대표하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입니다. 그것을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입법화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지속적으로 의료법 안에서도 이걸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틀어서 이들을 규율하는 법을, 제정법을 만들면서 이것을 제외시키는 게 저는 간호조무사협회 의견을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입니다.

○**남인순 위원** 나중에 생기면 논의합시다.

○**서영석 위원** 그런 논리대로면 교육부나 다른 단체들에 대한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김미애 위원** 안 만들 것 같아요. 법이 이게 하나 마나인데 누가 어느 대학이 이걸 만들겠어요.

○**남인순 위원** 아니, 있지도 않은 걸 전제로 이 논의를 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

○**이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없는 걸 만들려고……

○**김미애 위원** 아니지. 이걸 해도……

○**서영석 위원** 이게 아니어도 대학생들이 41%가 응시를 해요, 지금 간호조무사에.

○**김미애 위원** 돌아가는 거잖아.

○**이수진 위원** 학원에 이미 가고 있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김미애 위원** 그런데 아까 무슨 입직경로에 따라서 다르다, 저는 그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수진 위원** 아니, 왜요? 맞지요. 전문대학을 나온 간호조무사와 학원을 나온 간호조무사 간에 현장에서 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김미애 위원** 글쎄요, 저는 그런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수진 위원** 아니지요, 그런 것들을 법체계라든지 교육제도로써 만들어 주면 되지요. 교육제도로 만들어 줘야지.

○**김미애 위원** 저는 그분들의 인격에 대한 판단인 것 같아서 그거는 정말 동의 못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인격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병원에서 업무 하다 보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명옥 위원** 위원장님, 저……

○**소위원장 강선우** 서명옥 위원님.

○**서명옥 위원** 차관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호인력 조무사의 여러 가지 수급 현황에 대해서는 혹시 통계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제가 알기로 배출된 인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배출된 인원은 한 88만 그 정도 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한 22만 정도 됩니다.

○**서명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개원가에는 거의 대부분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맞습니다, 예.

○**서명옥 위원** 여기 보시면 특성화고를 나오면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응시할 수 있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서명옥 위원** 그렇지만 일반고라든지 일반대학, 대학원을 나온 석박사라 할지라도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학원을 가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런데 간호학원에 대해서는 혹시 실태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학원에 대해서요?

○**서명옥 위원** 예.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저희가 따로 실태조사는……

○**서명옥 위원** 자, 실태조사 한번 해 보세요. 교육이 엉망입니다. 간호조무사학원에 학원비를 갖다가 이삼백만 원 내면요 학원 안 다녀도 나중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줍니다. 그래서 과연 양질의 간호조무사 교육이 될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실태조사를 하시고요. 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감독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보건활동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아주 특수영역에, 아주 고도화된 간호사에 필요한 영역도 있고요, 또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간소화된 간호조무사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호조무사 채용이 어렵습니다, 간호사협회의 강력

한 반발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반드시 대한민국에서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여러 가지 수급 현황이라든지 학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요……

양질의 간호사 수급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 못지않게 간호조무사의 교육과 관리 감독, 양질의 간호조무사 보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대학이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 그거는 시장에 맡길 사항이고요. 또 간호협회의 반대로 전문대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도 여러 가지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간호조무대학을 가서 조무사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각자 국민한테 맡기면 되는 사항이고요, 너무 쓸데없는 걱정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보고요.

일단 간호조무사학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보세요. 학원 안 다니고도 조무사 시험 봅니다. 그러면 그 조무사의 교육 양질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진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원급은 거의 간호조무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네의원에서 보는 간호인력은 대부분 간호조무사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크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게 합당하게 그 자질과 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나 이런 곳들은 인증제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질에 대한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학원 쪽은 저희가 그런 직접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자질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서명옥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간호학원에서의 간호조무사 교육 형편이 아주 조악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전문대학도 개인적 의견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저희가 그거는 지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학력에 따라서 고졸과 전문대졸 간의 계층화, 현장에서의 갈등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럴 소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간호사의 역사를 보면 간호사도 지금은 4년제로 통합이 됐지만 예전에 2년제·3년제·4년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 들어왔고 그분들 간에 갈등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2년제하고 4년제 간의 자격을 저희가 달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이수진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이수진 위원 어쨌든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맞는 말씀이에요. 3년제·4년제 간호사면허가 같습니다, 병원에 입사를 해서. 그런데 현장에서는 면허는 같은데 학제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간호조무사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원화되면, 현장에서 일할 때는 면허가 같아요. 그렇다면 뭔가 방안을 만들어서 해결……

이미 그전에도,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차관께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갈등이 너무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고요. 병원에서 바깥에 다 얘기를 일일이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그때부터 일하셨던 분들 불잡고 다 물어보십시오, 3년 제·4년제 간호학과 이원화로 인해서 같은 면허를 가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래서 이제 4년제로 다 일원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허가 같은데 이렇게 입직경로가 다르면 갈등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미국처럼 LPN이라든지 AN, NA,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맞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뻔히 보이는 갈등을 그냥 복지부가 방관한다라고밖에는 저 볼 수 없고, 만약에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복지부가 그 책임 져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남인순 위원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21대 때도 쟁점이 됐던 사안이고 왜 이런 안이 나왔느냐 하면 법이 제정되려고 하면 이 문제도 분명하게 어느 정도는 조율이 돼서 갈 필요가 있겠고, 지금 대령으로 위임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곧, 바로 전문대를 신설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대를 신설하거나 하려면 또 많은 과정과 절차들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조문에서 대령 위임을 해 주면 학력 제한에 대한 그런 시비는 최소한 해소를 하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중재의 노력이라고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위원님들 특별히 더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심사는 여기 정도까지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더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선우 김미애 김 윤 남인순 백혜련 서명옥 서영석 안상훈 이개호 이수진
이주영 전진숙 최보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